

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

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 대상 종합 마케팅 지원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‘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’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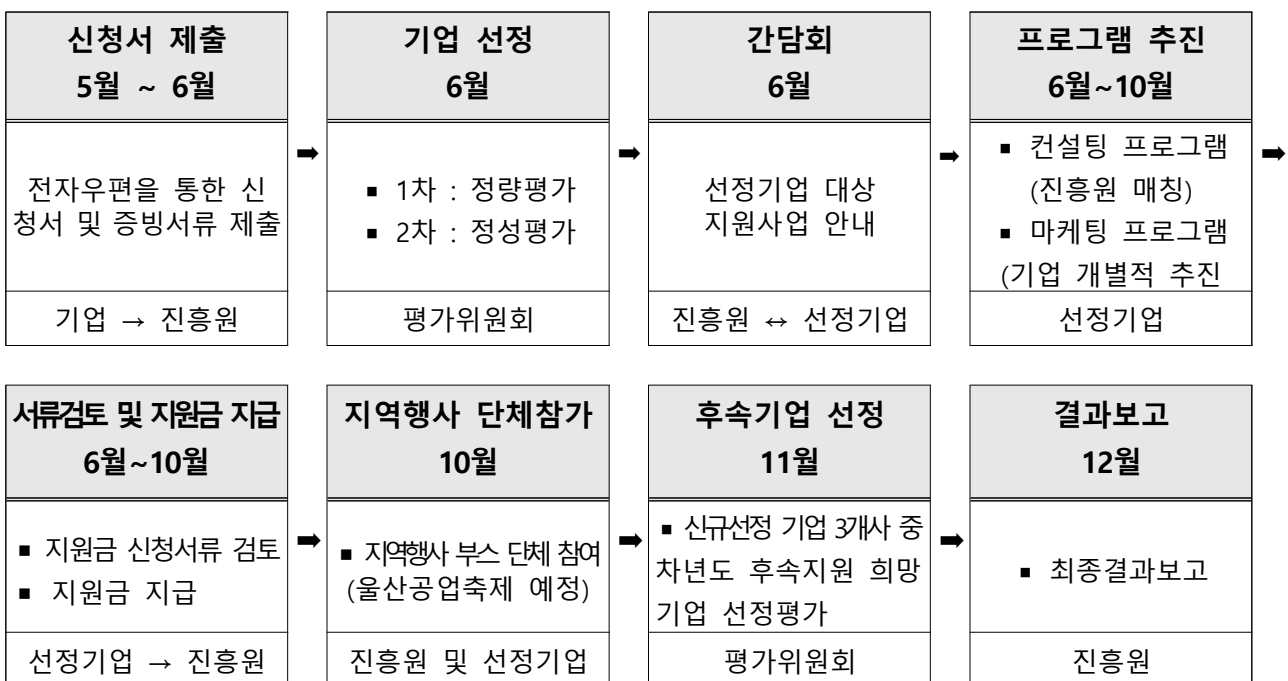
2026. 6. 4.

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유망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
- 사업기간 : 2026. 5월 ~ 12월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울산시 소재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
- 지원규모 : 총5개사 내외(전년도 후속지원 기업 2개사, 신규 선정기업 3개사)
- 지원내용 : 전문 컨설팅, 마케팅 프로그램 및 판로개척 지원 ※ 표 참조

2 추진절차



3

세부 지원내용

-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 중 지역행사 참여는 평가점수와 별개로 선정기업의 사업 참여 의무 사항임

지원분야	세부내용	기업지원
전문 컨설팅 프로그램	① 경영전략 심화 - 경영전략 수립, 경영관리 방안도출, 자금 전략 등 -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, 비즈니스 모델 진단, 마케팅 방향 설정 등 - 로컬브랜드 성장을 위한 지점 유망상권 도출, 프랜차이즈화 등	전문 컨설팅 1개 분야 이상 지원
	② 브랜드 고도화 - 브랜딩 체계화 및 고도화, 네이밍 전략 수립 -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메뉴 구성 및 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	
	③ 인증(전문분야) 지원 - 제조시설 및 제조, 판매를 위한 인증 컨설팅(프로세스) 지원 - 기술 관련 인증 컨설팅 지원 ※ 법률, 노무, 세무, 지적권 등 타기관 연계	
마케팅 지원	① SNS 마케팅 - 검색 엔진 최적화, 키워드, 배너, 인플루언서, 블로그/체험단, 유튜브 광고 등	기업 선택형 1개 분야 이상 지원 (최대 2개) ※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
	② 라이브커머스 -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	
	③ 패키지 디자인 - CI, BI, 패키지 등 전문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	
	④ 스마트 전환 - 반응형 홈페이지(모바일 APP) 개발, 정보화 구축 등 - 온라인 판매채널 상세페이지 제작, 제품 홍보 영상 제작 등	
판로개척 지원	① 지역행사(울산공업축제, 동행축제 등) - 필수참여 - 부스 참가비 무상지원 - 장비 임차비, 홍보비(현수막, 리플렛), 인건비, 쿠폰발급비 등 지원 ※ 주관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	※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항목에 따라 조정 가능
	② 전시박람회 - 국내 전시 박람회 부스 참가 및 박람회 홍보비(현수막, 리플렛) 지원	※기업당 최대 160만원 한도 지원기업 수에 따라 조정 가능
	③ 판촉행사 - 대형마트, 팝업스토어, 플리마켓 등	

4 신청접수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 ~ 6. 12.(금), 18시까지

○ 신청방법 : 전자우편 접수(biz@ubpi.or.kr)

※ 모든서류는 **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**

※ 메일제목 및 파일명에 유의하여 제출 (**메일제목 및 파일명: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- 기업명**)

○ 제출서류 ※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

구분	신청 및 제출서류	발급기관
제출 서류	◦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	서식 1,2
	◦ 기업(개인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	서식 3
	◦ 성실의무 이행서약서	서식 4
	◦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·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	홈택스 및 정부24
	◦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 사본	sminfo.mss.go.kr
	◦ 직전년도(2025년) 표준재무제표증명원(손익계산서 포함)	홈택스 및 정부24
	◦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	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
가점 우대	◦ 국내외 지식재산권(국내외 특허·디자인·상표 등록증·ISO 인증) ※ 각종 상장 및 출원 진행중 제외	유효기간 내
	◦ 여성/장애인기업 확인서 ◦ 최근 2년 내 울산광역시 수상기업(우수 소상공인 표창, 모범 소상공인 포상,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, 모범장수기업, 성실(유공)납세자 등)	해당시

○ 지원제외

지원제외 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

- 정부·지자체, 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유사·동일사업에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
- 선정 후 폐업·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- 유망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기수혜기업
- 유망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제외업종 영위기업 ☞ 참고
-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기업(단,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)
- 현재 휴·폐업,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파산·화해·법인회생·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
-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 인 경우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(기업)
-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- 최근 3년간 「공정거래법」 위반사실로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신청 및 완료보고 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

5 선정방법

- 선정절차 :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정성평가(70점)
- 평가방법 : 외부전문가 3인 이상 구성, 정량(30) + 정성(70) 평가
- 선정기준 :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, 3개사 선정
 - (동점시) : ①정성평가 고득점 기업 ②정량평가 항목 고득점 기업 ③지역성 항목 고득점 기업 ④신규기업 순으로 우선 선정
- 후보선정 : 6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선정기업 외 차 순위 순 선발

□ 평가기준

평가요소		세부 평가항목	배점 및 기준					점수
일반항목(25)	사업 업력 (5)	• 사업업력 (1년 이상)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	5년 이상	4년 이상	3년 이상	2년 이상	1년 이상	
			5	4	3	2	1	
	매출규모 (10)	• 매출액 (2025년) `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상의 매출액 ※ 재무제표 미발급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상의 매출액 기준	3억 이상	2억 이상	1억 이상	5천만원 이상	5천만원 미만	
			10	8	6	4	2	
	근로자수 (10)	• 고용인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고용보험 가입자 ※ 모집 기간 내 발급한 명부 기준	5인 이상	4인	3인	2인	1인	
			10	8	6	4	2	
특정항목(5)	국내외 인증 및 해외규격 지식재산권 (5)	• 인증 및 해외규격 혁신인증(벤처, 이노비즈, 메인비즈) 경영시스템(ISO), 제품·품질 인증, 기타인증서)	2건 이상	1건		미보유		
			3	2		0		
		• 지식재산권 : 국내외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, 저작권, 저작인격권, SW 등	2건 이상	1건		미보유		
			2	1		0		
정성심사(70)	추진역량 (10)	• 대표자 역량 및 의지, 지원 사업의 취지·목표 이해도					5	
		• 추진일정·예산·인력배치의 현실성					5	
	사업성 (20)	• 자사 제품·서비스의 마케팅 역량 미흡 등 지원사유의 구체성					10	
		• 마케팅 지원을 통한 확대 전략(신규 채널 진입, 타깃시장 전환 등) 효과성					10	
	제품경쟁력 (20)	• 주력 제품·서비스가 기술성·품질 등에서 동종 대비 차별성					10	
		• 타깃 시장(국내·해외)에 적합한 시장 수용 가능성					10	
지역성 (20)	• 지역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					10		
	• 지역 이해도 및 자원 활용도					10		
합 계							100	
가점 (3)	우대기업	○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기업					1	
		○ 최근 2년 내 울산광역시 수상기업(우수 소상공인 표창, 모범 소상공인 표창,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, 모범장수기업, 성실(유공)납세자 등)					2	
총 계							103	

6 유의사항

- 「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보조금법」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
-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(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)
- 중앙부서 및 광역·기초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,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
-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,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공고문 내용 미숙지, 적격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
-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선순위자 사업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
- 선정기업 해당 필수사항인 지역행사 참여 미이행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음

*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제4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

7 문의처

주관기관	담당자	전자우편	연락처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	성장지원팀 허슬 선임	hpine@ubpi.or.kr	052-283-7134

- 붙임 1.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1부
2. 서식집 1부. 끝.

첨부 1

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증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표준산업분류	업종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

*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* 기타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
※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·향락 등 불건전업종, 기타 국민보건·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·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

구분	한국표준산업분류(세부업종)	
건전문화관련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(47859) 중 - 성인용품 판매점	
	•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0) 중 - 흥신소	
	• 오락장 운영업(9122) 중 -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	
	•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(96999) 중 -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	
도박 및 게임관련	•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33409) 중 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	
	• 장난감 및 취미, 오락용품 도매업(46463) 중 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	
	• 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(47640) 중 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	
	•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(47911)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(47912) 중 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- 성인용품 도소매업	
	•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90) 중 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	
	•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) 중 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	•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(63992) -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	
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(75999) 중 -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	
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(91113) -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	
	•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96992) - 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	
	• 그 외 기타 정비서비스업(63999) 중 -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(63999-1)	
	투기조장	• 경영 컨설팅업(71531) 중 - 기획부동산업 ^{주)}

주) (운영형태)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 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체